

품명	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				
HS code	8531.10				
관세율(%)	MFN	FTA		RCEP	
		'23	'24	'23	'24
	10	1	0	8	7



▶ 해당 품목의 對중 수출 증감률은 '20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, '24년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2.2%의 수출증감률을 기록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

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8531.10)

(단위 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8,287	0.7
2020	4,952	-40.2
2021	3,592	-27.5
2022	3,531	-1.7
2023	3,674	4.0
2023.6	1,355	-17.2
2024.6	3,419	152.2

▶ 중국은 소방산업 시장 규모 세계 1위 국가로, 화재경보기를 비롯한 중국의 스마트 소방산업 트렌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해당품목의 對한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2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中
수출동향

(HS 8531.10)

- ▶ 도난·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(HS 8531.10)의 對中 수출금액은 “화재경보기(HSK 8531.10-2000)”와 “그 밖의 신호기기(HSK 8531.10-9000)”가 주요 수출 비중을 차지하며, “화재경보기(HSK 8531.10-2000)”의 경우 수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, “그 밖의 신호기기(HSK 8531.10-9000)”의 경우 2023년 수출금액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임

한국 연도별 對中 수출동향(HS code 8531.1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2분기
		총계	3,531	3,674	3,419
1	8531.10-1000	도난경보기	30	134	31
2	8531.10-2000	화재경보기	1,006	1,865	1,364
3	8531.10-3000	가스경보기	17	159	43
4	8531.10-6000	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	7	16	13
5	8531.10-9000	그 밖의 신호기기	2,471	1,500	1,968
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8531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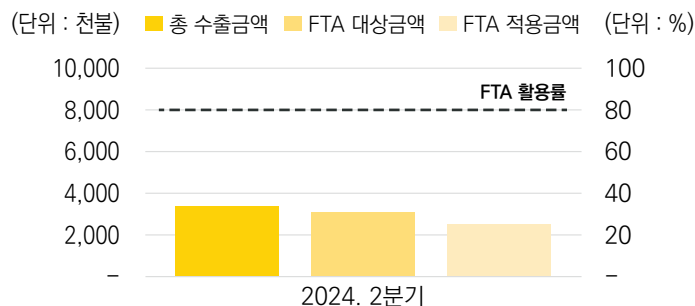
- ▶ HS 8531.10(도난·화재경보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) 對中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추후확인

- FTA 활용률 '24년 2분기 80.8%로 나타남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중 FTA는 CTH or RVC 40%, RCEP은 CTSH or RVC 40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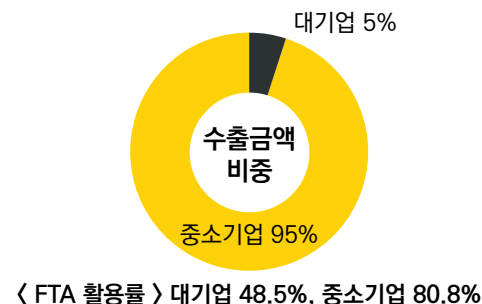
- ▶ '24년 2분기 기준, HS 8531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5%, 중소기업 95%임
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48.5%, 중소기업 80.8%임

[HS 8531.10 對中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3~2024)]



[HS 8531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2분기)]



중국 수입 동향

- ▶ '24년 6월 기준 중국의 HS 8531.10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, 말레이시아, 스웨덴, 노르웨이,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(23.6%), 말레이시아(13.5%), 스웨덴(11.7%), 노르웨이(7.8%), 영국(6.0%), 한국(4.7%) 등의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2022년 중국 국무원 안전위원회가 소방 사업과 관련된 《제14차 5개년 계획》을 발표함에 따라 스마트 소방산업 법률 체계가 강화되고,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
 - 인공지능, 빅데이터,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소방기술은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중국의 90% 이상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구축과 연계된 스마트 소방 건설 계획을 발표함, 이로 인해 소방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 잠재력이 높아짐
 - ▶ 소방제품의 경우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公安部 산하 소방제품 합격평가센터에서 발급하는 강제성 상품 인증(CCCF 인증*)을 취득해야만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함
 - CCCF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중국 내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벌금이 부과됨
 - 다만, 2019년 4월부터 특정용도(기술 연구 및 시험에 필요한 샘플, 보수의 목적으로 필요한 부품, 공장 라인에 필요한 부품 등 상업적 판매용이 아닌 한정적인 용도)에 사용되는 수입 소방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인증이 면제됨
- * CCCF 인증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for Fire Products)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특정 소방 관련 제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제도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중 FTA 특혜관세는 0%이며 MFN은 10%로 한-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-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% 있는 품목이며, 주요 수입국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음
- ▶ 중국 내 공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스마트 시티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소방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선정품목에 대한 수요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- 화재경보기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강화되는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